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기재방식과 典據資料

홍승우
(명지대 강사)

머리말

I. 무관조의 구성과 내용

II. 무관조 전거자료의 종류와 성격

맺음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1023634).
- 투고일: 2015. 2. 23. ● 심사일: 2015. 2. 26. ● 게재확정일: 2015. 3. 9.

요약

이 논문은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형식과 기재방식을 검토하여, 그 전거자료의 종류와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관조는 侍衛府, 諸軍官, 凡軍號, 衿·軍官花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위부는 직관지 상·중의 관부들과 동일한 형식과 기재방식을 가지고 있어 같은 성격의 전거자료에 의거했다고 볼 수 있다.

제군관 항목은 군관직별로 정원과 연혁, 군단별 배속 인원, 착금 여부, 임명가능관등을 기술하고 있어, 관부를 기준으로 정리되었던 직관지 상·중과 다른 형식을 가진다. 하지만 구성 내용이나 기재방식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또 기본 전거자료가 특정 시점의 일괄 자료가 아니라, 개별 군관직 혹은 일련의 군관직군별로 있었던 것도 직관지 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제군관 항목의 기본 전거자료 역시 직관지 상·중과 유사한 ‘격’ 형식의 법 조문 혹은 그것을 정리한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전거자료 이외에 착금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되었다.

범군호 항목은 군단에 대한 규정인 법 조문 자체가 주요 전거자료이며, 금색에 대한 내용을 가진 추가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금·군관화 항목은 제군관 항목과 범군호 항목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한 추가 자료였기에, 무관조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직관지, 무관조, 기재방식, 전거자료, 격

머리말

『三國史記』職官志(이하 직관지로 칭함)는 新羅 중앙 官制와 군사, 지방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직관지 하 무관조(이하 무관조로 칭함)는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신라의 군관직과 군사조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신라 군사제도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¹⁾ 이에 일찍부터 여러 연구자들이 무관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초기에는 신라 군사제도 연구에서 그 성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으며,²⁾ 무관조 자체의 성격과 전거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관지 상·중과 그 형식과 반영하고 있는 시기가 달랐던 점이 일찍부터 주목받았고,³⁾ 직관지 상·중과는 다른 계통의 전거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신라 전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주로 중대까지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는데,⁴⁾ 이를 통해 무관조가 신라 중대 자료를 가지

-
- 1) 신라 군사제도 연구들은 모두 무관조를 필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라 군사제도 연구가 무관조 내용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六停과 九誓幢 및 十停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무관조를 바탕으로 한 신라 군사제도 연구의 주요 성과를 몇 개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의諸問題』, 東洋文庫; 井上秀雄, 1974, 「新羅兵制考-職官志兵制の組織を中心として-」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李基白, 1978,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李成市, 1979, 「新羅六停의再檢討」 『朝鮮學報』92; 武田幸男, 1984, 「中古新羅의軍事的基盤」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と農民』, 山川出版社; 張봉룡,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李仁哲,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 2) 末松保和. 위의 책, 311쪽; 井上秀雄, 위의 책, 131~132쪽
- 3) 三池賢一, 1971, 「新羅內廷官制考(上)」 『朝鮮學報』61, 8쪽
- 4) 李仁哲은 法幢이 하대까지 존속했다고 주장하였는데(이인철, 앞의 책, 323~324쪽), 이 주장을 따른다면, 무관조가 하대의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법당은 중고기에 성립하여 중대 즈음에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편찬되었다고 파악되어 왔다.

이후 기재방식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관조의 전거자료와 그 사료적 성격을 고찰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무관조에 대한 연구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⁵⁾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관조는 전거자료의 계통과 찬술방식의 차이가 보이는 侍衛府, 諸軍官, 凡軍號, 衿·(軍官)花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시위부 항목은 시위부에 대해 정리된 신문왕대 이후의 단일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았다. 제군관은 신문왕대 군제 개혁 이후 경덕왕대 이전의 군제를 반영하는 기본 전거자료와 그 외 군사조직에 관한 추가 자료가 찬술에 사용되었으며,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하는 경우와 무관조 편찬시에 재정리·서술하는 경우가 같이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범군호 항목은 제군관 항목의 기본 전거자료와 같은 시기의 군사조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했다고 보았다. 마지막 금·(군관)화 항목은 직관지에 실리기 적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군제와 관련하여 수집된 단편적인 자료를 재정리·서술하여 실었다고 파악하였지만 반영하고 있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무관조는 직관지 중 가장 자세히 검토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관지 상·중과 전거자료의 계통과 대상 시기가 달랐다는 이해를 전제로 깔고 무관조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관지 상·중과 비교·검토하여 무관조 전거자료의 성격을 확실히 규명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는 직관지의 다른 부분의 전거자료 성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직관지 상의 기재방식을 통해 그 전거자료의 성격을 추론한

5)李文基, 1990,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史料的 檢討」 『歷史教育論集』15; 1997,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內容과 性格」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바 있는데,⁶⁾ 특정 시점의 일괄 자료가 그 전거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관제 개정에 대한 왕교나 그것을 집성한 법전류가 전거자료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는 직관지 상·중의 관부별 기재방식과 무관조의 관직별 기재방식이라는 차이가 바로 전거자료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관조의 기재방식과 전거자료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에 필자가 진행하였던 직관지 기재방식의 검토를 통해 그 전거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무관조 자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무관조 전거자료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관조의 전거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두고 검토하겠다.

무관조는 신라 전시기의 군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내용에서도 같은 신라 당대의 금석문이나 『삼국사기』의 본기와 열전 등의 자료와 상치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무관조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있는 다른 사료들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일단 무관조의 내용보다 형식과 기재방식을 통해 그 전거자료의 성격을 밝히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무관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6) 홍승우, 2015, 「『삼국사기』 직관지의 典據資料와 신라의 관제 정비 과정」 『新羅文化』

I. 무관조의 구성과 내용

직관지는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태봉의 관제도 부가되어 있다. 하지만 신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분량은 권상·중 전체와 하의 3/4 이상에 해당한다. 직관지의 내용 중 신라 관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舊唐書』 직관지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먼저 大輔와 경위 17관등을 기술하고, 上大等, 大角干, 太大角干의 유래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하고 있다. 이어 권상·중·하에 걸쳐 중앙 관부(內省 이하 宮官 포함), 武官(政官 포함), 外官⁸⁾ 순으로 신라의 관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관지 상에는 중앙 관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관부 이름 다음에 그 연혁이 나오고, 소속 관직의 정원과 연혁, 그리고 임명가능관등이 제시되어 있다.

직관지 상의 기재방식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거자료가 최종 정리된 형태의 志나 특정 시점의 일괄자료인 法典 혹은 典章類가 아니고, 관제에 대한 왕의 교나 그 교를 모아 범조문화한 ‘格’ 혹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관부별 혹은 몇 개의 관부군별로 전거자료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의 관제 정비가 어느 한 순간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 보다는, 개별 관부 내지는 몇

7) 李文基, 1997, 앞의 책, 22~25쪽 및 박수정, 2010, 『『삼국사기』 잡지의 편찬과 직관지의 체제』 『韓國史學報』41, 79~84쪽 참조.

8) 외관조는 都督에서 縣令에 이르는 지방관직에 대한 기술과 溟江鎮典 소속 관원에 대한 정보를 적고 있다. 군관직들이 배속된 왜강진전을 군사조직으로 보고, 외관조에 들어간 것을 직관지의 오류로 보기도 하지만(三池賢一, 앞의 논문, 3쪽), 『구당서』 직관지에서 諸鎮·戍·關이 외관조의 마지막에 기술된 것을 참고하여 의도적으로 외관조에 넣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몇 관부를 묶어서, 혹은 관직별로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⁹⁾

직관지 중은 내성을 필두로 하는 宮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부별로 배속 관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어 직관지 상과 거의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직관지 하는 무관과 정관, 그리고 외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무관조는 직관지 상·중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앞에 나오는 侍衛府는 상·중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데, 관부명과 그 연혁이 나오고 이어 소속 군관직의 정원과 연혁, 그리고 임명가능관등이 기록되어 있다.

시위부가 무관조의 가장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시위부가 여타 군사조직을 통괄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¹⁰⁾ 시위부가 국왕과 직결된 군사조직으로 신라 군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이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¹⁾ 하지만 시위부가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는 직관지가 전범으로 삼았던 구당서 직관지 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당서 직관지의 무관조에서 왕궁의 숙위를 담당한 左·右衛가 가장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직관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무관조의 가장 앞에 시위부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¹²⁾ 또 무관조 중 유일하게 직관지 상·중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겠다.

시위부 항목은 그 형식과 내용 구성이 직관지 상·중과 거의 같기 때문에 유사한 전거자료를 가졌다고 추정된다. 즉 관원에 대한 규정과 연혁

9) 洪承佑,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28~262쪽 및 洪승우, 2015, 앞의 논문

10) 井上秀雄, 1974, 앞의 책, 155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79, 『조선전사5(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쪽

11)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339쪽

12) 李文基, 앞의 책, 29쪽

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격’ 유형의 법전 혹은 그것을 반영한 규정·제도 서술에 의거하였다고 파악된다.

시위부에 이어서 諸軍官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제군관은 무관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데, 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관직 별로 여러 군단에 얼마나 배속되었는가를 적시하는 기재방식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군관 항목 내용 일람

기재 순서	군관직 명	총 인원수 표기		연혁 유무	배정 군단 내역	착급 여부	임명 가능 관등 표기
		유형	실제표기				
1	將軍	서두	共三十六人	○	六停, 九誓幢, 熊川州停		(六停)眞骨上堂~上臣 (九誓幢)眞骨級浪~角干
2	大官 大監	말미	共六十二人	○	六停, 九誓幢	(六停)無衿 (九誓幢)著衿	(眞骨)舍知~阿浪 (次品)奈麻~阿浪
3	隊大監	말미	共七十人		(馬兵)鬪衿幢, 十停, 九誓幢, 五州誓 (步兵)六停, 九誓幢	並著衿	奈麻~阿浪
4	弟監	말미	共六十三人	○	六停, 九誓幢, 鬪衿幢	(六停)無衿	舍知~大奈麻
5	監舍知	서두	共十九人	○	六停, 九誓幢, 鬪衿幢, 三武幢	無衿	舍知~大舍
6	少監	말미	共三百七十二人	○	六停, 九誓幢 (騎兵)十停, 九誓幢, 鬪衿幢, 五州誓 (步兵)六停, 九誓幢, 五州誓	六停無衿 此外皆著衿	大舍已下
7	火尺	말미	共三百四十二人		(大官)六停, 九誓幢 (騎兵)鬪衿幢, 十停, 九誓幢, 五州誓 (步兵)六停, 九誓幢, 三武幢		與少監同
8	軍師 幢主	말미	共十九人	○	王都, 六停, 九誓幢, 三武幢	(王都)無衿 (그외)著衿	奈麻~一吉浪
9	大匠尺 幢主	말미	共十五人		六停, 九誓幢	無衿	與軍師幢主同
10	步騎 幢主	말미	共六十三人		王都, 六停, 九誓幢, 三武幢	(王都)無衿	奈麻~沙浪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기재방식과 典據資料

11	三千幢主	말미	共六十人		十停	著衿	舍知~沙浪
12	著衿騎幢主	말미	共一百七十八人		九誓幢, 鬪衿幢, 五州誓, 四千幢		與三千幢主同
13	緋衿幢主	서두 + 말미	(사)四十人 (말)共四十人		九州	著衿	舍知~沙浪
14	獅子衿幢主	말미	共三十人		王都, 九州	著衿	舍知~一吉浪
15	法幢主	말미	共一百五十八人		百官幢主, 京餘甲幢主, 小京餘甲幢主, 外餘甲幢主, 弩幢主, 雲梯幢主, 衝幢主, 石投幢主	無衿	
16	黑衣長槍末步幢主	말미	共二百六十四人		六停, 九誓幢		舍知~級浪
17	三武幢主	말미	共四十八人		三武幢		與末步幢主同
18	萬步幢主	말미	共三十七人		京五種幢主, 節末幢主, 九州萬步幢主	無衿	舍知~大奈麻
19	軍師監	말미	共三十二人		王都, 六停, 九誓幢	(王都)無衿 (그외)著衿	舍知~奈麻
20	大匠尺監	말미	共十五人		六停, 九誓幢	無衿	舍知~大奈麻
21	步騎監	서두 + 말미	(사)六十三人 (말)共六十三人		王都, 六停, 九誓幢, 三武幢	著衿	與軍師監同
22	三千監	말미	共六十人		十停	著衿	舍知~大奈麻
23	師子衿幢監	서두	三十人				幢[吉士]~奈麻
24	法幢監	말미	共一百九十四人		百官幢, 京餘甲幢, 外餘甲幢, 四設幢	無衿	舍知~奈麻
25	緋衿監	서두	四十八人		領幢, 領騎兵		
26	著衿監	말미	共一百七十五人		九誓幢, 鬪衿幢, 五州誓, 四千幢		幢[吉士]~奈麻
27	皆知戟幢監	서두	四人		王都		舍知~奈麻
28	法幢頭上	서두	百九十二人		餘甲幢, 外法幢, 弩幢		

29	法幢 火尺	말미	共二百五十九人	軍師幢, 節子衿幢, 京餘甲幢, 外餘甲幢, 四設幢	
30	法幢辟 主	말미	共四百八十六人	餘甲幢, 外法幢, 弩幢	
31	三千卒	서두	百五十人		大奈麻已下

이러한 기재방식은 직관지 상·중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고, 상·중이 경덕왕대와 혜공왕대 관호 개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 비해, 무관조는 대체로 신문왕대까지의 군사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상·중과는 다른 전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¹³⁾ 그리고 관부별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거자료를 거의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상·중과 다른 편찬방식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군관과 범군호 항목이 별도의 전거자료에 의거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범군호 부분이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하는 찬술방식이었던데 비해, 제군관 부분은 일부는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하기도 했지만, 기본 전거자료와 추가 전거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서술하는 찬술방식도 있었다고 하였다.¹⁴⁾ 그렇기 때문에 제군관 부분에서 사용된 용어나 표현이 신라 당시의 전거자료의 것 그대로가 아니라, 직관지 편찬 당시의 것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직관지 상과 제군관 항목을 비교할 때, 관부별 기술과 (군)관 직별 기술이라는 형식적 차이를 제외하면, 관직명-인원수-연혁-임명가능관등이라는 내용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직관지 상에서 보이는 임명가능관등을 다른 관부의 동일 관직과 비교하는 기재방식도 제군관 항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¹⁵⁾

13) 三池賢一, 앞의 논문, 8쪽

14) 李文基, 위의 책, 45쪽

15) 직관지 상의 임명가능관등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홍승우, 2011, 앞의 논문, 235~238쪽 참조.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군관직의 임명가능관등 표기는 직접 해당 관등을 적시하는 방식과 다른 군관직과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 이 중 후자는 직관지 상과 마찬가지로, 무관조 편찬시에 새롭게 쓴 표현이 아니라, 전거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동일한 임명가능관등을 가진 군관직들이 각각 해당 관등을 직접 표기한 사례들이 많을 뿐 아니라,¹⁶⁾ 같은 임명가능관등을 가진 여러 군관직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三千幢主와 著衿騎幢主, 그리고 緋衿幢主의 임명가능관등은 모두 속회에서 沙滄까지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 세 군관직은 연이어서 기재되어 있다. 가장 앞의 삼천당주는 직접 해당 관등을 명시했으나, 착금기당주는 ‘位與三千幢主同’과 같이 비교 형식을 썼다. 만약 이러한 비교가 편찬 당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술된 것이라면, 뒤이어 나오는 비금당주 역시 착금기당주와 동일하게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비금당주는 해당 관등을 직접 명시했다.¹⁷⁾

軍師監, 步騎監, 法幢監, 皆知戟幢監의 사례도 동일하다. 이들의 임명가능관등은 사지~奈麻로 동일하다. 가장 먼저 나오는 군사감은 해당 관등을 적시하였고, 보기감은 군사감과 비교 형식으로 기재했다. 법당감과 개지극당감은 다시 해당 관등을 그대로 적었다. 만약 무관조 찬술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면 이런 기재방식이 나타날 리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군관직과 비교 형식의 임명가능관등 기재방식은 원전의 기술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16) 大官大監(次品)-隊大監, 三千幢主-緋衿幢主, 師子衿幢監-著衿監, 軍師監-法幢監-皆知戟幢監, 弟監-萬步幢主-大匠尺監-三千監

17) 이와 관련하여 비금당주를 하대에 육정과 구서당이 해체된 후 9주에 설치된 비금당의 군관이라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全德在, 1997, 『新羅 下代 鎮의 設置와 性格』 『軍史』35, 51~52쪽). 비금당주가 하대에 와서 설치된 군관직이라면, 삼천당주·착금기당주와 다른 전거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성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표현 방식 역시 동일하다면, 관부별 기술과 (군)관직별 기술이라는 형식의 차이만으로 완전히 다른 계통의 전거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군관 항목의 기재방식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전거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군관 항목 다음에는 凡軍號 항목이 있다. 범군호 항목은 23개 군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속 무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어 있다. 관부와 소속 관원을 하나의 세트와 하고 있는 직관지 상·중과 달리 무관조는 군단과 무관직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전거자료에 의거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범군호 항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凡軍號 二十三’이라는 표기와 함께 23개 군단의 이름이 나열되는 앞부분과 각 군단의 세부 군단명과 그 연혁, 그리고 색의 색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는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뒷부분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범군호 전체, 곧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하나의 전거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¹⁹⁾ 그러나 이 범군호를 구성하는 두 부분이 모두 하나의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자.

18) 본고에서는 범군호의 앞부분에 나오는 23개 군사조직을 ‘군단’으로 칭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각 군단을 구성하는 군부대를 ‘세부 군단’이라 하겠다. 앞부분의 23개 군단이 상위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그 구성 군부대를 망라하여 지휘하는 상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의 구성 군부대와 제도상 위상차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동일하게 군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23개 군단을 구성하고 있는 군부대라는 점이 드러나게 ‘세부 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부대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가 대대감이 지휘하는 전술단위로 하나의 군사조직이 여러(부)대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최상기, 2013, 『6~7세기 신라 六停의 戰時 運用』 『韓國史論』59, 48~52쪽), ‘군단’으로 칭하겠다.

19)李文基, 앞의 책, 35~36쪽

【표 2】범군호 항목 내용 일람

기재 순서	군단명	세부군단명	연혁	금색 표시	비고
1	六停	○	○	○	
2	九誓幢	○	○	○	비금서당의 금색 없음
3	十幢(十停)	○	○	○	
4	五州誓	○	○	○	
5	三武幢	○	○		
6	鬪衿幢		○	○	
7	急幢		○	○	
8	四千幢		○	○	
9	京五種幢			○	
10	二節末幢			○	
11	萬步幢			○	9주 중 完山州 없음
12	大匠尺幢			□[無衿]	
13	軍師幢		○	○	
14	仲幢		○	○	
15	百官幢			□[無衿]	
16	四設幢	○		□[無衿]	
17	皆知戟幢		○	○	
18	三十九餘甲幢			□[無衿]	
19	仇七幢		○	○	
20	二鬪幢	○	○	○	
21	二弓	○	○	□[無衿]	
22	三邊守幢	○	○	□[無衿]	
23	新三千幢	○	○	△[未詳]	

A-1) 凡軍號二十三 一曰六停 二曰九誓幢 三曰十幢 (중략) 十八曰三十九餘甲幢 (중략) 二十二曰三邊守 (후략)

A-2) ① 十停[或云三千幢] 一曰音里火停 (후략)

② 三十九餘甲幢 無衿[謂京餘甲 小京餘甲 外餘甲等也 其數未詳]

③ 三邊守幢[一云邊守] 神文王十年置 一曰漢山邊 二曰牛首邊 三曰河西邊 無衿

범군호 항목의 뒷부분이 앞부분과 하나의 세트이기는 하지만, 같은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군단명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과 일부 군단의 경우 누락된 세부 군단명을 다른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23군호 중 세 번째가 뒷부분에서 十停이라는 이름이 표제어로 기재되었는데, 앞부분에서는 十幢으로 나오는 차이를 들 수 있다. 신라에서 ‘당’과 ‘정’은 서로 통용되는 용어로 여겨지므로, 이는 사소한 차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의 세트로 동일한 전거자료에 같이 실려 있던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 23군호 중 22번째인 三邊守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앞부분에서는 ‘삼변수’라는 군단명을 사용하는데, 뒷부분에서는 ‘삼변수당’이라는 대표 이름을 썼다. 그런데 뒷부분 삼변수당에 ‘一云邊守’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이 주석은 『삼국사기』 편자에 의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전거자료에 실린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쩌면 앞부분의 ‘三邊守’라는 군단명이 뒷부분 주석의 전거였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三十九餘甲幢이 있다. 삼십구여갑당은 그 전체 세부 군단명이 확인되지 않고, 주석으로 3개가 적시되어 있다. 이 3개의 세부 군단명은 제국관 항목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⁰⁾

결국 범군호 항목의 뒷부분은 앞부분과 동일한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가 추가되었거나 별개의 전거자료에 입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범군호 전거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20) 위의 책, 36쪽

무관조를 구성하는 마지막 항목은 衿·軍官花에 대한 기술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衿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고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무관조 편찬시 찬자가 기술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어 大·中·下將軍花를 필두로 大監·弟監·少監·火尺·軍師幢主·軍師監·大匠尺幢主·三千幢主·三千監·諸著衿幢主花의 재질과 규격 및 부속된 鈴의 재질과 규격을 기술하고, 그 유래와 의미를 적고 있다. 군관화의 재질과 규격은 신라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²¹⁾ 유래와 의미는 금과 마찬가지로 무관조 편찬자가 설명을 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금·군관화 항목은 직관지의 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輿服志와 같은 것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²²⁾ 직관지 전체는 물론, 무관조 안에서도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 항목이 왜 무관조에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제군관 항목과 범군호 항목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하지 못했다.

한편 무관에 대한 기술에 이어 ‘政官’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관을 당시 정치형태를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무관조에 편입시켰다고 보거나,²³⁾ 착오로 무관조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⁴⁾ 즉 정관을 무관조에 부속된 항목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필자는 이를 무관과 외관조 사이에 배치된 불교 관련 관제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일단 무관조 검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²⁵⁾

21) 이문기는 이 부분이 극히 단편적인 저본자료를 바탕으로 무관조 찬자가 재정리·서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앞의 책, 36~37쪽). 그러나 재질과 규격에 대한 기술이 일관적이어서 이를 단편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서술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특히 재질과 규격이 빠짐없이 서술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군관화에 대한 규정 자체를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 이문기, 앞의 책, 28쪽

23) 三品彰英, 1943, 『新羅花郎の研究』, 三省堂, 273쪽

24) 李弘植,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473쪽

이상에서 무관조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이제 장을 바꾸어 무관조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군관과 범군호 항목을 중심으로 그 기재방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관조 전거자료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Ⅱ. 무관조 전거자료의 종류와 성격

먼저 제군관 항목의 기재방식과 내용을 통해 전거자료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군관이 하나의 전거자료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논증한 바가 있다.²⁶⁾ 제군관의 전거자료는 범군호 항목에 나오는 군단 23개에 배속된 군관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 전거자료와 그 외 군사조직 혹은 군단 주둔지에 배속된 군관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추가 전거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장군직의 사례를 볼 때, 우선 연혁 부분 중 일부가 기본 전거자료와는 다른 자료에 입각하여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1) 將軍 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位自眞骨級滄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 加置三人

25) 정관 부분의 전체적인 형식은 직관지 상의 중앙 관부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관도 시위부와 마찬가지로 직관지 상과 동일한 전거자료를 가졌다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26) 이문기, 앞의 책, 39~45쪽

장군직의 정원이 앞에 36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36인은 경덕왕대에 추가로 두어진 웅천주정의 3인이 제외된 숫자이다. 따라서 웅천주정에 추가된 장군 3인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뒤에 삽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웅천주정은 범군호 항목에 제시된 23개 군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추가 전거자료를 23군호에 포함되지 않는 군단과 관련한 정보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23군호에 제시된 군단에 배속된 군관직들은 모두 같은 전거자료를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제군관 항목의 기재방식을 살펴보면, 추가 자료에 의거한 서술은 23군호에 포함되는 군단에 대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군관직의 총 인원수 기재방식이다. 제군관 부분의 각 군관직의 총 인원수 표기 방식은 앞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형1①) (서두) 共△△人 : 將軍, 監舍知

유형1②) (서두) △△人 : 師子衿幢監, 緋衿監, 皆知戟幢監, 法幢頭上, 三千卒

유형2) (서두+말미) △△人+共△△人 : 緋衿幢主, 步騎監

유형3) (말미) 共△△人 : 그외 전부

유형1)은 직관지 상·중이나 무관조에 이어 나오는 외관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 방식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를 전거자료에서 그대로 전제한 인원수로 파악하였다. 그에 비해 유형3)은 말미에 ‘共△△人’이 기재된 것으로 무관조 이외의 직관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표기를 무관조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찬자가 계산하여 적은 것으로 파악하였는데,²⁷⁾ 그 근거로 제군관 항목에서 무관직의 총

합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步騎幢主와 著衿監의 사례를 들었다.

B-2) 步騎幢主 王都一人 無衿 大幢六人 漢山六人 貴幢四人 牛首州四人 完山州四人 碧衿幢四人 綠衿幢四人 白衿幢四人 黃衿幢四人 黑衿幢四人 紫衿幢四人 赤衿幢四人 靑衿幢四人 白衿武幢二人 赤衿武幢二人 黃衿武幢一人 共六十三人 位自奈麻至沙滄爲之

B-3) 著衿監 碧衿幢十八人 綠衿幢十八人 白衿幢十八人 黃衿幢十八人 黑衿幢十八人 紫衿幢十八人 赤衿幢十八人 靑衿幢十八人 鬪衿六人 菁州六人 漢山六人 完山六人 河西三人 牛首幢三人 四千幢三人 共一百七十五人 位自幢至奈麻爲之

보기당주는 나열된 군관 숫자의 실제 총합이 62이나 ‘共六十三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관조 찬자가 저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서술하면서 총인원 기록은 저본자료의 군단별 인원수를 합산하여 ‘共六十三人’으로 기록하고, 부대별 배속인원의 기록에서는 황금무당의 인원을 1명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총원 기록이 서두에 나오는 유형1)은 저본자료의 것을 전제한 것이고, 말미에 있는 유형3)은 찬자의 재정리·서술과정에서 새로 첨가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 말미의 ‘共△△人’이 전거자료에 없는 것을 무관조 찬술시에 계산하여 기재하였다고 보기 힘든 사례가 존재한다. 바로 유형2) 서두와 말미에 정원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緋衿幢主와 步騎監의 사례이다.

B-4) 緋衿幢主 四十人 沙伐州三人 敵良州三人 (중략) 珍州八人 共四十人 著衿 位自舍知至沙滄爲之

B-5) 步騎監 六十三人 王都一人 大幢六人 (중략) 黃衿武幢二人 著衿 共六十三人 位與軍師監同

27) 이문기, 앞의 책, 42~43쪽

비금당주와 보기감은 앞에 인원수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총합을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숫자는 일치한다. 만약 말미의 인원 총합이 무관조 찬술시에 계산된 것이라면, 이 사례들처럼 중복하여 기재할 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서두의 인원 기재를 찬술시 빼려고 했으나 실수로 남겼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미 전거자료의 서두에 나오는 총합을 다시 계산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보기당주의 사례에서 황금무당의 인원을 잘못 옮겨 적는 실수를 무관조 편찬시에 범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실수를 했음에도 말미의 총인원수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별도의 계산을 하지 않고 전거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편찬 당시에 직접 계산한 것이라면, 오히려 오류가 쉽게 수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착금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열된 인원의 실제 총합은 177인이나, 175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착금감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무관조 편찬시 계산 착오로 보기 보다는, 배정 인원 기록의 일부 누락으로 일치하지 않는 총합이 발생한 것을 그대로 전제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결국 서두의 인원수나 말미의 인원 총합 모두 전거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기감의 사례와 같이 23군호에 포함된 군단에 대한 내용도 복수의 전거자료가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거자료의 종류가 단순히 범군호 항목에 포함된 군단과 그렇지 않은 군단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군관직에 대한 기술이 복수의 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군관직이 복수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 이외에, 각 군관직 혹은 군관직군별로 다른 시기를 반영하는 전거자료가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육정에 배속된 군관직들의 기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군관직별 육정 기재 방식 일람

기재 순서	군관직명	육정 배열 순서 ()는 배정 인원수					
1	將軍	대당(4)	귀당(4)	한산정(3)	완산정(3)	하서정(2)	우수정(2)
2	大官大監	대당(5)	귀당(5)	한산정(4)	우수정(4)	하서정(4)	완산정(4)
3	隊大監(步兵)	대당(3)	한산정(3)	귀당(2)	우수정(2)	완산정(2)	
4	弟監	대당(5)	귀당(5)	한산정(4)	우수정(4)	하서정(4)	완산정(4)
5	監舍知	대당(1)	상주정(1)	한산정(1)	우수정(1)	하서정(1)	완산정(1)
6	少監	대당(15)	한산정(15)	하서정(12)	우수정(13)	완산정(13)	
	少監(步兵)	대당(6)	한산정(6)	귀당(4)	우수정(4)	완산정(4)	
7	火尺(大官)	대당(15)	귀당(10)	한산정(10)	우수정(10)	하서정(10)	완산정(10)
	火尺(步兵)	대당(6)	한산정(6)	귀당(4)	우수정(4)	완산정(4)	
8	軍師幢主	대당(1)	상주정(1)	한산정(1)	우수정(1)	하서정(1)	완산정(1)
9	大匠尺幢主	대당(1)	상주정(1)	한산정(1)	우수정(1)	하서정(1)	완산정(1)
10	步騎幢主	대당(6)	한산(6)	귀당(4)	우수주(4)	완산주(4)	
16	黑衣長槍末步幢主	대당(30)	귀당(22)	한산(28)	우수(20)	완산(20)	
19	軍師監	대당(2)	상주정(2)	한산정(2)	우수정(2)	하서정(2)	완산정(2)
20	大匠尺監	대당(1)	상주정(1)	한산정(1)	우수정(1)	하서정(1)	완산정(1)
21	步騎監	대당(6)	한산(6)	귀당(4)	우수(4)	완산(4)	

범군호 육정 항목의 세부 군단명은 大幢, 貴幢(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完山停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군관 항목에서 육정 군단을 기재할 때 군관직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 범군호의 기재 순서와 같은 일정한 원칙 없이 임의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⁸⁾ 하지만 흑의장창말보당주를 제외하고는 배정된 인원이 많은 순으로 기재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 군단명이 다르게 기재된 사례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육정의 세부 군단 중 귀당은 범군호에 기재된 연혁에 의하면, 552년(진흥왕 13)에 설치되었다가 673년(문무왕 13)에 귀당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그

28) 육정 이외에도 구서당과 오주서 등의 배열 순서가 군관직별로 다르다.

런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귀당이라는 군단명을 사용하지만, 監舍知, 軍師幢主, 大匠尺幢主, 軍師監, 大匠尺監은 상주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귀당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군관직과 상주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군관직이 구분되며, 각각 별도 시점의 전거자료를 가지고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주정과 귀당이라는 군단명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이, 제군관 항목을 찬술하면서 찬자가 임의로 번갈아 가며 쓴 것일 가능성도 있다.²⁹⁾ 하지만 상주정과 귀당은 전거자료의 기술을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계통의 군관직들은 동일한 군단명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주정은 군사당주-군사감, 대장척당주-대장척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大官大監-隊大監-弟監-少監-火尺 계열의 기본 군관직과 步騎幢主-步騎監은 공통적으로 귀당을 사용하고 있다. 군단명 사용에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고 있어, 임의의 표기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주정이라는 명칭의 사용 자체이다. 육정의 다른 세부 군단 중 하나인 완산정의 연혁에 대한 기술을 보면 685년(신문왕 5)에 기존의 하주정을 파하고 완산정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기술 내용에 따르면 673년에 귀당으로 이름이 바뀌는 상주정과 완산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 된다. 따라서 제군관 항목에서 사용된 상주정이라는 군단명은 신라 당대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무관조 찬술시에 임의로 사용한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범군호 항목의 기재를 볼 때, 상주정이라는 군단명은 임의로 사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다음의 사료 C)에서 볼 수 있듯이 범군호의 육정 항목에서 연혁 기술은 일관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29) 이문기, 앞의 책, 45쪽

- C)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衿色紫白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 改爲貴幢 衿色靑赤
三曰漢山停 本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 罷新州停 置南川停 眞平王二十六年 罷南川停 置漢山停 衿色黃靑
四曰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五曰河西停 本悉直停 太宗王五年 罷悉直停 置河西停 衿色綠白
六曰完山停 本下州停 新文王五年 罷下州停 置完山停 衿色白紫

이중 대당은 설치이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5정의 연혁 기술은 직관지 상의 중앙 관부들과 차이를 보인다. 중앙 관부들은 최초 설치시의 명칭이나 규정을 앞에 기술하고, 이어 변화되는 내용을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³⁰⁾ 하지만 육정 중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완산정의 경우 최종 명칭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최초 설치시에서 최종 명칭까지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本△△停~年罷△△停置○○停’ 형식의 기재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上州停은 나머지 4정과 다른 연혁 기재방식을 가진다. 최초 설치시의 명칭을 내세우고 이어서 최종 명칭까지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는 직관지 상의 중앙 관부에 대한 기술 방식과 동일하다. 상주정만 나머지 4정과 다른 기재방식을 가지게 된 것은, 원 전거자료에서 귀당이 아니라 상주정이란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육정의 세부 군단명이 전거자료에 해당, 상주정,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완산정으로 적시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전제하였기 때문에 상주정의 연혁 기술 방식이 나머지 4정과 다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범군호 육정 항목에 기재된 상주정이란 군단명은 전거자료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보아야 하며,³¹⁾ 제군관 항목의 일부 군관

30) 홍승우, 2015, 앞의 논문, 309~310쪽 참조.

직 기술에서 상주정 명칭이 사용된 것도 전거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일 군단의 다른 시점 명칭인 귀당과 상주정이 군관직에 따라 각각 사용된 것은, 개별 군관직 내지는 군관직군 별로 전거자료가 달랐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이는 여러 군관직의 구서당 배열 순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군관직을 구서당 군단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배정 인원이 많은 군단을 앞에 두었던 육정과 달리 구서당은 배속 인원이 적은 군단을 앞에 두었다. 육정과 구서당 배열 기준의 이러한 차이는, 군관직의 배속 군단 기재가 직관지 편찬시에 새로운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리 된 것이 아니라, 전거자료의 기술을 그대로 전제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또 구서당에 배속된 인원의 기재 순서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몇몇 군관직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형 1은 녹-자-백-비-황-벽-적-청의 순서로 배열된 것으로 장군과 대관대감, 대대감(마병)이 이에 속한다. 유형 2는 벽-녹-백-비-황-흑-자-적-청-비의 순서를 가지는데 감사지와 소감이 이에 해당한다. 제감의 경우 적금서당이 없지만 같은 순서를 가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또 화척(기병)과 보기당주·감, 착금기당주·감 역시 비금당이 없지만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겠다. 대대감(보병)과 소감(기병·보병) 및 화척(보병)은 비금당의 인원수가 다른 군단에 비해 많거나 적어서 그 순서가 가장 앞이나 뒤로 옮겨졌다고 보여 같은 유형에 넣었다. 유형 3은 2와 배열 순서가

31) 그렇다면 특정 시점에 상주정과 완산정이라는 군단명이 동시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범군호 육정 항목의 세부 군단 연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귀당으로 개칭된 이후 다시 상주정으로 복칭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추후의 과제로 돌린다.

【표 4】 군관직별 구서당 기재 방식 일람

유형	기재 순서	군관직명	구서당 배열 순서 [()는 배정 인원수]									
1	1	장군	녹금당 (2)	자금당 (2)	백금당 (2)	비금당 (2)	황금당 (2)	흑금당 (2)	벽금당 (2)	적금당 (2)	청금당 (2)	
	2	대관대감	녹금당 (4)	자금당 (4)	백금당 (4)	비금당 (4)	황금당 (4)	흑금당 (4)	벽금당 (4)	적금당 (4)	청금당 (4)	
	3	대대감(마병)	녹금당 (3)	자금당 (3)	백금당 (3)		황금당 (3)	흑금당 (3)	벽금당 (3)	적금당 (3)	청금당 (3)	
2	3	대대감(보병)	벽금당 (2)	녹금당 (2)	백금당 (2)	황금당 (2)	흑금당 (2)	자금당 (2)	적금당 (2)	청금당 (2)	비금당 (4)	
	4	제감	벽금당 (4)	녹금당 (4)	백금당 (4)	비금당 (4)	황금당 (4)	흑금당 (4)	자금당 (4)	적금당 (4)		
	5	감사지	벽금당 (1)	녹금당 (1)	백금당 (1)	비금당 (1)	황금당 (1)	흑금당 (1)	자금당 (1)	적금당 (1)	청금당 (1)	
	6	소감	벽금당 (13)	녹금당 (13)	백금당 (13)	비금당 (13)	황금당 (13)	흑금당 (13)	자금당 (13)	적금당 (13)	청금당 (13)	
	6	소감(기병)	비금당 (3)	벽금당 (6)	녹금당 (6)	백금당 (6)	황금당 (6)	흑금당 (6)	자금당 (6)	적금당 (6)	청금당 (6)	
	6	소감(보병)	벽금당 (4)	녹금당 (4)	백금당 (4)	황금당 (4)	흑금당 (4)	자금당 (4)	적금당 (4)	청금당 (4)	비금당 (8)	
	7	화척(기병)	벽금당 (6)	녹금당 (6)	백금당 (6)	황금당 (6)	흑금당 (6)	자금당 (6)	적금당 (6)	청금당 (6)		
	7	화척(보병)	벽금당 (4)	녹금당 (4)	백금당 (4)	황금당 (4)	흑금당 (4)	자금당 (4)	적금당 (4)	청금당 (4)	비금당 (8)	
	10	보기당주	벽금당 (4)	녹금당 (4)	백금당 (4)	황금당 (4)	흑금당 (4)	자금당 (4)	적금당 (4)	청금당 (4)		
	12	착금기당주	벽금당 (18)	녹금당 (18)	백금당 (18)	황금당 (18)	흑금당 (18)	자금당 (18)	적금당 (18)	청금당 (18)		
	21	보기감	벽금당 (4)	녹금당 (4)	백금당 (4)	황금당 (4)	흑금당 (4)	자금당 (4)	적금당 (4)	청금당 (4)		
	26	착금감	벽금당 (18)	녹금당 (18)	백금당 (18)	황금당 (18)	흑금당 (18)	자금당 (18)	적금당 (18)	청금당 (18)		
	3	8	군사당주	벽금당 (1)	녹금당 (1)	비금당 (1)	백금당 (1)	황금당 (1)	흑금당 (1)	자금당 (1)	적금당 (1)	청금당 (1)
9		대장척당주	벽금당 (1)	녹금당 (1)	비금당 (1)	백금당 (1)	황금당 (1)	흑금당 (1)	자금당 (1)	적금당 (1)	청금당 (1)	
19		군사감	벽금당 (2)	녹금당 (2)	비금당 (2)	백금당 (2)	황금당 (2)	흑금당 (2)	자금당 (2)	적금당 (2)	청금당 (2)	
20		대장척감	벽금당 (1)	녹금당 (1)	비금당 (1)	백금당 (1)	황금당 (1)	흑금당 (1)	자금당 (1)	적금당 (1)	청금당 (1)	
4	7	화척(대관)	녹금당 (10)	비금당 (10)	자금당 (10)	백금당 (13)	황금당 (13)	흑금당 (13)	벽금당 (13)	적금당 (13)	청금당 (13)	
5	16	흑의장창 말보당주	자금 (20)	황금 (20)	흑금 (20)	벽금 (20)	적금 (20)	청금 (20)	녹금 (24)			

거의 동일하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가 비·백으로 바뀌어 있다. 군사당주·감과 대장척당주·감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 4와 5는 동일한 사례가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군단 배열 순서의 차이가 전거자료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라면, 군관직별로 전거자료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 3에 속한 군사당주·감과 대장척당주·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육정의 세부 군단명 사용에서 귀당 대신 상주정을 사용하고 있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즉 군사당주·감과 대장척당주·감이 배속된 육정과 구서당 군단 기술에서 자기들끼리는 공통성을 지니고, 다른 군관직들과는 다른 양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다른 군관직과는 다른 시점의 전거자료에 의거하여 기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유사한 양상을 黑衣長槍末步幢主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흑의장창말보당주의 육정 배열 순서는 다른 군관직과 완전히 다르게 배속된 인원과 상관없이 나열되고 있으며, 한산정·우수정·완산정의 경우 ‘정’이 빠진 채로 기재되어 있다.³²⁾ 구서당 배열 순서는 백금서당과 비금서당이 빠져 있고 녹금서당 배속 인원의 숫자가 많아 가장 뒤에 기재되었지만, 순서 자체는 유형 1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육정과 유사하게 ‘당’자가 빠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흑의장창말보당주 항목의 특징적인 기재방식은 그 전거자료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군관직과 다른 전거자료를 가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32) 흑의장창말보당주 외에 보기감도 ‘정’자가 빠진 채 기록되어 있다. 보기감과 같은 계열의 군관직인 보기당주 역시 유사한데, 한산정은 ‘정’을 빼고 한산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우수정과 완산정은 각각 우수주, 완산주로 기록되어 있다. 보기당주와 보기감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군관직들과는 확연히 다르면서 둘은 공통적인 기재방식을 지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역시 군관직군별로 별도의 전거자료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결국 제군관 항목이 하나 이상의 전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범군호 항목에 나오는 군단에 대한 것과 그에 속하지 않는 군단에 대한 것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군관직별 혹은 일련의 군관직군별로 전거자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군관직 자체에 두 가지 이상의 전거자료가 있었던 것을 인원수의 총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군관직별 기재 내용들이 몇 종류의 전거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자. 일부 군관직에서 누락이 있기도 하지만, 군관직별로 기재된 정보는 대체로 ‘군관직명-인원수-연혁-군단별 배속 인원-인원 합계-착금 여부-임명가능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관지에서 제군관 항목과 같이 관직별로 정보를 기재하는 형식을 가진 것은 외관조가 있다. 외관조에는 都督 이하 縣令까지 관직별로 기본적으로 인원수, 임명가능관등이 제시되어 있고 일부는 연혁이 추가되어 있다.³³⁾ 하지만 구체적인 인원의 배속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참고한다면 제군관이 사용한 기본 전거자료의 내용은 三千卒의 사례와³⁴⁾ 같이 어느 특정 시점의 인원수와 임명가능관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나오는 인원 합계는 추가 전거자료에 의한 것인데, 이는 군단별 배속 인원과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군단별 배속 인원 역시 추가 전거자료의 것으로 판단된다.

군관의 착금 여부에 대한 정보 역시 추가 전거자료에서 가져온 정보로 보인다. 착금 여부를 기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D-1) ① 隊大監 領馬兵 鬪衿一人 (중략) 完山州誓一人 領歩兵 大幢三
(중략) 緋衿幢四人 共七十人 並著衿 位自奈麻至阿浪爲之

33) 都督과 仕臣 및 外司正에 연혁이 기재되어 있다.

34)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下 武官 “三千卒 百五十人 位自大奈麻已下爲之”

- ② 監舍知 共十九人 法興王十年置 大幢一人 (중략) 黃衿武幢一人 無衿 位自舍知至大舍爲之
- ③ 大匠尺幢主 大幢一人 (중략) 靑衿幢一人 共十五人 無衿 位與軍師幢主同
- ④ 緋衿幢主 四十人 沙伐州三人 (중략) 武珍州八人 共四十人 著衿
- ⑤ 步騎監 六十三人 王都一人 大幢六人 (중략) 黃衿武幢二人 著衿 共六十三人 位與軍師監同
- D-2) ① 大官大監 眞興王十年置 掌大幢五人 (중략) 完山停四人 無衿 綠衿幢四人 (중략) 靑衿幢四人 共六十二人 著衿 眞骨位自舍知至阿浪爲之 次品自奈麻至四重阿浪爲之
- ② 軍師幢主 法興王十一年置 王都一人 無衿 大幢一人 (중략) 黃衿武幢一人 共十九人 著衿 位自奈麻至一吉浪爲之
- ③ 軍師監 王都二人 無衿 大幢二人 (중략) 靑衿幢二人 共三十二人 著衿 位自舍知至奈麻爲之
- D-3) ① 弟監 眞興王二十三年置 領大幢五人 (중략) 完山停四人 無衿 碧衿幢四人 (중략) 鬪衿幢一人 共六十三人 位自舍知至大奈麻爲之
- ② 步騎幢主 王都一人 無衿 大幢六人 (중략) 黃衿武幢一人 共六十三人 位自奈麻至沙浪爲之
- D-4) 少監 眞興王二十三年置 大幢十五人 (중략) 靑衿幢十三人 領騎兵 音里火停二人 (중략) 完山州誓三人 領步兵 大幢六人 (중략) 完山州誓九人 共三百七十二人 六停無衿 此外皆著衿 位自大舍已下爲之

착금 여부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D-1)과 같이 인원수 합계 뒤 임명가능관등 앞에 나오는데, 이는 배속된 군단에 상관없이 착금 여부가 동일할 경우의 표기법이다. 배속된 군단에 따라 착금 여부가 다를 경우 표기법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지만, D-2)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표기 위치가 특이하다. 대관대감의 경우 육정에 배속된 인원은 ‘無衿’, 곧 금을 착장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구서당 인원은 금을 착장하고 있다. 그런데 구서당

인원의 금 착장 여부를 구서당 배속 인원 표기 바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정과 구서당 인원의 총합 뒤에 적기하고 있어, 마치 육정에 배속된 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착금하고 있는 듯 기술되어 있다. 군사당주와 군사감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착금 여부 기재 위치의 어색함은 착금 여부에 대한 기재가 다른 정보와 함께 원 전거자료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에 입각하여 추가된 정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D-3)과 D-4)의 사례들도 착금 여부가 별도의 자료에 있었던 정보였음을 방증한다. D-3) ① 제감의 경우 육정에 배속된 인원은 무금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구서당과 계금당에 배속된 인원의 착장 여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같은 계통의 군관직이면서 배속 군단의 구성이 유사한 대관대감이나 소감의 사례를 볼 때, 육정 배속 인원은 무금이었고, 그 외 군단 배속 인원은 착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감에 대한 기술에서 육정이외 군단 배속 인원의 착금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누락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군단별 배속 인원 정보는 있는 것을 볼 때, 착금 여부는 인원수 정보가 있는 것과 다른 추가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D-3) ② 보기당주의 사례도 동일하다. 보기당주는 왕도에 배속된 인원이 무금이라는 정보만 있고, 그 외의 인원의 금 착장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에 비해 보기당주와 세트를 이루는 보기감은 왕도에 배속된 인원 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적지 않고 단순히 착금했다는 기록만 있다. 두 관직의 착금 여부가 동일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면, 보기당주는 왕도 배속 인원 에 대한 착금 정보만이, 보기감은 그 외 배속 인원 에 대한 것만이 기록된 추가 자료의 정보를 삽입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재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D-4) 소감의 사례는 착금 정보가 다른 자료에 입각하여 추가된 정보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소감은 육정과 구서당, 심정 및 오주서에 배속되

었는데, 육정에 배속된 인원만 무금이었고, 다른 군단은 금을 착장하였다. 그런데 소감은 일반, 領騎兵, 領步兵으로 구분되고 각 군단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례들과 같이 군단 뒤에 삽입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서술하였던 것이다. 결국 각 군관직의 착금 정보는 별도 자료의 정보를 삽입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정리하면, 제군관 항목은 군관직별로 총인원수, 연혁, 임명가능관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군단별 배속 인원 및 합계와 착금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진 두 종류의 추가 자료를 그 안에 삽입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범군호 항목의 전거자료에 대해 검토해 보자. 범군호 항목은 군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속 무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어 있다. 관부와 소속 관원을 하나의 세트와 하고 있는 직관지 상·중과는 달리 무관조는 군단과 무관직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제군관과 범군호 항목이 각각 별도의 전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³⁵⁾

문제는 범군호 항목이 몇 종류의 전거자료에 의거했으며, 어떤 성격과 내용의 전거자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범군호 항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凡軍號 二十三’이라는 표기와 함께 23개 군단의 이름이 나열되는 앞부분과 각 군단의 세부 군단명과 연혁, 그리고 衿의 색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는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제군관 항목과 범군호 항목을 결합하여 정리하면, 직관지 상·중과 유사한 형식으로 무관조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무관조에서 제군관과 범군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직관지가 기본 전거자료의 기재형식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일부 추가 자료를 삽입시키기는 했어도, 군관직별 기술이나 군단별 기술은 전거자료의 것을 거의 그대로 쓴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관지 상·중의 관부별 기술 형식 역시 단편적인 사료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전거자료의 기본 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앞부분은 특정 시점에 존재했던 신라 군단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거자료에 대한 단서로 ‘凡’자에 주목하고 싶다. ‘범’은 당 율령이나 일본 율령 형식에서 개별 영 조문의 서두에 오는 글자이다. 즉 ‘범군호 이십삼’은 군단에 대한 규정을 담은 신라의 법전류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

뒷부분 역시 23군단의 세부 군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앞부분과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동일한 전거자료에 같이 실려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서는 범군호 항목 뒷부분의 기재방식과 내용을 통해 그 전거자료의 성격을 검토해 보자. 뒷부분의 구성 내용은 앞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부 군단명-연혁-금색’의 세 가지이다. 하지만 세 가지 요소 중 모든 군단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는 없다. 이는 뒷부분의 내용이 모두 하나의 전거자료에 실려 있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전거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앞부분과 세트를 이루는 뒷부분을 구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뒷부분의 전거자료 중 하나는 연혁이 실려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혁은 일부 군단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주된 전거자료로 보기는 힘들다. 뒷부분의 주된 전거자료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많은 군단들에 정보가 기재된 금색이다. 구서당중 緋衿 靑幢과 三武幢을 제외한 모든 군단이 금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京五種幢이나 二節末幢은 연혁과 세부 군단명에 대한 정보는 일체 없이 세부 군단별 금색만 기재되어 있고, 大匠尺幢과 百官幢, 그리고 三十九餘甲幢의 경우는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금이 없었다[無衿]’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뒷부분의 주된 전거자료가 금색에 대한 것일 가능성

이 매우 높음을 확인시켜 준다.

萬步幢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만보당 역시 세부 군단명이 적시되지 않고, 금색이 9주에 각각 2개씩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³⁶⁾ 제군관 항목에서 九州萬步幢主가 18명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9주마다 만보당이 2개씩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주에 2개의 만보당이 있었기 때문에 2개의 금색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범군호 만보당에서는 9주가 모두 등장하지 않고 8주만이 나온다. 나머지 한 주가 완산주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완산주 만보당의 금색이 전거자료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만보당에 대한 기술의 전거자료가 전적으로 금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거자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만보당의 사례는 금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 전거자료에 누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색에 대한 정보가 없는 비금서당과 삼무당의 경우 역시 전거자료에서의 누락으로 여겨진다. 금을 사용하지 않는 군단들에게는 ‘금이 없다[無衿]’고 따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봐서 이들은 단순히 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금색의 정보만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군단 자체가 전거자료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연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연혁이 적혀있는 전거자료에 주로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아울러 짐작하게 한다.

금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거자료에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은 新三千幢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삼천당의 금색은 ‘未詳’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未詳’이라는 표현은 직관지에서 매우 드문 편으로,³⁷⁾ 비

36)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下 武官 “萬步幢 九州各二衿色 沙伐州 靑黃靑紫 (중략) 武珍州 白赤白黃”. ‘萬步幢 九州各二衿色’을 일반적으로 ‘만보당은 구주에 각각 둘이 있었다. 금색은’이라고 해석하나(이병도 역주, 1996, 『三國史記(下)』, 을유문화사 및 鄭求福 등 번역,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구주(만보당)에 각각 2개의 금색이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7) 직관지 전체에서 관련 정보를 ‘未詳’으로 적시한 사례는 무관조 범군호 중 삼십구

금서당과 삼무당에서 금에 대한 기재가 아예 없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완산주의 만보당이나 비금서당, 삼무당의 경우는 군단명까지 전거자료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금색이 ‘未詳’이라 기재된 신삼천당은 전거자료에 군단명은 들어가 있으나 금색 부분만 멸실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금색을 미상이라고 굳이 적시한 것은 금색에 대한 정보가 전거자료상에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결국 범군호 항목은 군단명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법 조문을 전제한 앞부분과 금색에 대한 추가적인 전거자료를 중심으로 세부 군단명과 연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된 뒷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금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단서는 무관조를 구성하는 마지막 항목인 금·군관화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항목에서 군관화 부분은 대장군 이하 13군관의 화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전거자료를 전제하고, 군관화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해설은 무관조 찬자의 기술이고, 그 앞의 규정이 이 부분의 전거자료를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에 앞서 나오는 금 부분은 금에 대한 규정은 없이 해설만 달려있다.

금에 대한 해설을 굳이 넣은 이유가 앞의 제군관 항목과 범군호 항목에 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추가로 넣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군관이나 범군호에 등장하지도 않고 직관지의 내용으로 부적합한 군관화 부분까지 들어간 것은 어색하다.³⁸⁾ 무관조 부분의 분량이 적어 확보 가능한 군사조직 및 군관 관련 자료를 모두 넣었다고 하기에, 무관조의 분량이 직관지 상·중과 비

여갑당에 대한 주석과 신삼천당의 금색, 그리고 외관조 外司正의 임명가능관등 정도만 있다. 이외에도 무관조 금·군관화 항목 중 關의 규격에 대한 제도, 군관화의 의미 등에 미상을 썼으나, 이들은 찬자의 설명에 등장하는 것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38) 군관화에 군관직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앞의 제군관 항목과 중복되는 정보들이라 할 수 있어, 굳이 추가로 기재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

교하여 적은 편이 아니어서 납득하기 어렵다.³⁹⁾

그렇다면 군관화 항목은 단독으로 무관조에 삽입된 것이 아니며, 바로 앞의 금 부분과 하나의 세트르 묶여 있다고 판단된다. 즉 원 전거자료에서 군관별 착금 여부에 대한 규정 및 군단의 금색 규정에 대한 자료와 군관화에 대한 규정이 함께 담겨 있었고, 그 중 금에 대한 규정이 무관조의 전거자료로 활용되면서, 그것과 같이 있던 군관화에 대한 내용 역시 무관조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직관지와 이질적인 성격의 금·군관화 항목이 무관조의 말미에 삽입된 것이다. 따라서 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역시 군관화와 같이 규정 그 자체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이상에서 무관조의 기재방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전거자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제 이를 정리하면서 무관조 전거자료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무관조를 구성하는 시위부, 제군관, 범군호, 금·군관화 네 항목은 일부 직관지 형식에 맞게 재배치·정리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전거자료의 표현이나 기본 틀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시위부 항목은 직관지 상·중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 그 전거자료도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9) 무관조에서 금·군관화 부분을 뺀 내용의 전체 글자수는 4,136자(주석 포함, 이하 동일)로, 직관지 상에서 집사성 이하 중앙 관부에 대한 내용의 글자수인인 4,225자와 거의 비슷하고, 직관지 중의 1,695자 보다 훨씬 많다. 금·군관화 부분의 글자수는 357자에 불과하다.

제군관 항목은 관부를 기준으로 한 직관지 상·중과 달리 군관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성 내용이나 기재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 전거자료가 특정 시점의 일괄 자료가 아니라, 개별 군관직 혹은 일련의 군관직군별로 있었던 것도 직관지 상과 유사하다. 또 전거자료는 정원, 관등 등이 주된 정보이기 때문에 군관직에 대한 규정 그 자체에 가깝다고 보인다.

직관지 상의 전거자료는 관부별로 집적 혹은 정리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관직별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 그렇다면 제군관의 전거자료는 군관직별로 집적·정리되었을 뿐 직관지 상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거자료의 성격이 직관지 상과 마찬가지로 군관직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격’ 형식의 법 조문 혹은 그것을 정리한 자료로 추정된다.⁴⁰⁾

제군관 항목은 군관직에 대한 정원과 임명가능관등 등의 규정에 대한 것 이외에 금의 착장 여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 내용은 별도의 추가 전거자료에 의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무관조의 마지막에 기재된 금·군관화 항목이 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범군호 항목은 23개 군단의 명단인 앞부분과 각 군단의 세부 구성 및 연혁, 금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뒷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특정 시기의 법 조문을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뒷부분은 별도의 추가 전거자료에 의거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주된 추가 전거자료는 무관조의 마지막 항목인 금·군관화 항목 중 금에 대한 규정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금·군관화 항목은 원칙적으로 직관지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나, 무관조의 주요 전거자료로 활용되었기에 무관조의 마지막에 포

40) 군관직에 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전 혹은 법 조문으로는 ‘(職員)승’류도 들 수 있지만, ‘영’은 특정 시점에 최종 정리된 일괄 자료이기 때문에, 군관직별로 그 시점이 다른 제군관 항목의 기본 전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함되었다고 보인다.

제군관과 범군호 항목은 신라 당대의 법전류에 기반하였다고 여겨지므로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전거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수의 전거자료가 동일한 시기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개별적으로 그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무관조를 통해 신라 군제 정비 과정을 검토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舊唐書』

2. 논저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三池賢一, 1971, 「新羅內廷官制考(上)」 『朝鮮學報』61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李基白, 1978,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79, 『조선전사5(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李成市, 1979, 「新羅六停의再檢討」, 『朝鮮學報』92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古代篇)』, 一潮閣

武田幸男, 1984, 「中古新羅의 軍事的基盤」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と農民』,
山川出版社

李仁哲,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강봉룡,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全德在, 1997,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35

박수정, 2010, 「『삼국사기』 잡지의 편찬과 직관지의 체제」 『韓國史學報』41

洪承佑,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최상기, 2013, 「6~7세기 신라 六停의 戰時 운용」 『韓國史論』59

홍승우, 2015, 「『삼국사기』 직관지의 典據資料와 신라의 관제 정비 과정」
『新羅文化』45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 source of the third volume of Samguksaki Jikgwanji

Hong, Sueng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original sources of the third volume of Samguksaki(三國史記) Jikgwanji(職官志). The third volume of Jikgwanji have several topics. This study only treated military organization part. The military organization part also contains four different articles which are Siwibu(Royal Guard), military officers, military forces, Decoration material for officers and forces.

Article of Siwibu has almost same contents and description style with the first and second volume. So the original sources may be the same too.

The Contents of article of military officers are information about military officers such as assigned number for each force, governmental rank and history. Article of military forces contains information of 23 military forces such as organization, history and color of Geum which is decoration material for forces. These articles looks like have different style of description compare to first and second volume's. But the contents are similar and also there are some common form of description appears. So the original sources of these articles have similar nature with the first and second volume's.

And These articles have main original source and additional ones. Main

사학연구 제117호(2015. 03)

sources would be Gyeok(格), which were essentially royal orders refined into a form of legal clauses about military officer and forces. Additional sources provide information about history and Geum. The last article of military organization part would be the additional source.

Keywords: Jikgwanji, military organization, description style, original source, Gyeok